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. 11. 9 선고 2020가단132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10. 5.

판 결 선 고 2021. 11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고성군 D 임야 42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48㎡ 지상 녹색 판넬 지붕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건물 부분 대지 48㎡를 인도하라.
2.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● 주위적 청구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원 고성군 D 임야 424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48㎡ 지상 녹색 판넬 지붕 건물을

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424㎡를 인도하라.

● 예비적 청구

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48㎡ 지상 녹색 판넬 지붕 시멘트블록 건물에서 퇴거하고, 이 사건 토지 424㎡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 A은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아 2016. 11. 23.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

나. 원고 A은 2018. 10. 8.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1/2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48㎡ 지상에는 녹색 판넬 지붕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이 존재하고 있다. 그 밖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11, 12, 13, 14, 15, 16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30㎡ 지상에 회색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, 별지 도면 표시 17, 18, 19, 20, 21, 22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54㎡ 지상에 파란색 판넬 지붕 건물이 각 존재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 축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로 판단되고,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·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를

인도할 의무가 있다. 더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,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외 2동의 건물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위치, 면적,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48㎡를 넘어 나머지 부분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토지 인도 청구는 위 범위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[한편,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닌 단순 점유자인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물 퇴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를 구하고 있다.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 일부를 인용한 이상,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전제(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가 아닌 단순 점유자라는 전제)에 선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기로 한다].1)

3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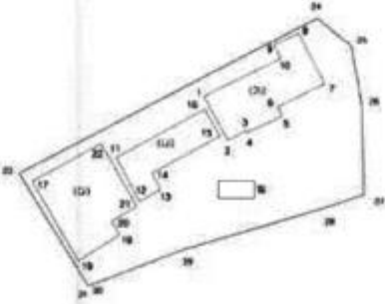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지성

감 정 도

토지 소재	고성군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범 계	영 칭
	지적선
	의결된 지적선 (간혹외백선)
	아래인한



지번 번호	면적(㎡)
(71)	48
(11)	30
(12)	54
	424
아래인한	

(특수)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.

2021년 8월 24일

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



비 고	이 측정결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1)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가 아닌 단순 점유자인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(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2다72469 판결의 취지 참조),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인도 청구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.